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7. 10.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이 항구적으로 존중되어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예우 및 지원대상(안 제2조)

-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개인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개인
- 국가보훈처에서 공적을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 나. 예산지원의 범위(안 제5조)

-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
- 호국 보훈의 달 각종 행사시 필요한 예산 등
- 기타 군수가 보훈단체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다. 복지지원의 범위(안 제6조)

- 군이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등의 감면
- 군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감면
- 군이 실시하는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
- 고령 및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증, 무료진료증 발급 및 무료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 제출의견 있음
- 기 간 : 2007. 7. 27 ~ 8. 17
  - 결 과 : 제출의견 반영
  -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의견제출처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대한상이군경회 평창군지회	조례안 제6조 복지지원 대상 중 14호 ....., 1~3급에 해당하는 중상이 국가유공자는 관내에 2명 밖에 없음으로, 1~4급에 해당하는 중상이 국가유공자로 확대 해 줄 것	1~4급으로 확대 반영

라. 기타사항 : 강릉·동해시, 영월·철원·인제군 등 5개 시군 시행 중에 있으며,  
타 자치단체는 우리군과 마찬가지로 심의중임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 및 지원 대상)** 예우 및 지원 대상은 평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개인
2.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개인
3. 제1호 및 제2호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보훈처에서 공적을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군민의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주요행사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주요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공공시설물(도로, 거리, 공원 등)에 희생·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 명칭 부여
4. 주요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 및 지원

5. 보훈관련 기념일, 각종 행사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조사 시 위로 · 격려
6.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시 지역 출신 희생 · 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7.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8. 군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5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 · 운영
2. 호국 · 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 · 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
5. 기타 군수가 보훈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해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직접 설치 · 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 · 체육시설 · 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 · 입장료 · 관람료 등의 감면
2. 군이 직접 설치 ·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군이 직접 설치 ·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묘지의 일부를 「국가보훈대상자 묘역」으로 조성
4. 군이 설치 · 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병 · 의원, 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
5. 군이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교육비 감면과 보조
6. 군이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및 이용안내 표지판 설치 시 “국가유공자” 우선 표기
7.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가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 등록세 및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모든 민원증명 발급 수수료의 감면

8. 군이 실시하는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
9. 고령 및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증·무료진료증 발급 및 무료건강검진·예방접종 등
10. 군이 주관하는 개인택시 면허 시 우선순위 부여
11. 군이 건립하는 주택에 대한 입주
12. 기능직 등 신규 공무원 채용 시 취업보호대상자 임용
13. 경로자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 시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14. 생존 애국지사, 1~4급에 해당하는 중상이 국가유공자,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및 독자사망 유족에 대한 정기적인 생활실태 확인과 사망시 장례지원
15. 독립유공자 묘소의 개·보수에 따른 경비 지원과 안내 표지판 설치 등
16. 군이 관리하는 복지관련 성금액 중 일정비율을 보훈관련 복지시설에 배정
17.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창업 및 기업 활동 지원
18. 기타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제7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1. 국가보훈기본법('05. 5.31제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의 실시) ①(생략)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공훈선양 시설의 건립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 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④ (생략)

##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05.3.31 개정)

제16조의2 (생업지원)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생략)

[본조신설 2005.3.31]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05.7.29 개정)

**제42조(진료)** 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행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27, 1994.12.31, 2001.1.16, 2005.7.29>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2005.7.29>

④(생략)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보호)** 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와 이들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의 수송시설외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1.12.27, 1994.12.31>

### 4.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05.3.31 개정)

**제12조의2(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